

예 산 총 칙

제 1조 2025년도 광명시가족센터 본예산총액은 다음과 같다.

광명시가족센터 세입.세출 예산 총액	
세 입	일십육억구백사십육만칠천원 (₩1,609,467,000)
세 출	일십육억구백사십육만칠천원 (₩1,609,467,000)
아이돌봄지원사업 세입.세출 예산 총액	
세 입	육십이억이천일백구십팔만칠천원 (₩6,221,987,000)
세 출	육십이억이천일백구십팔만칠천원 (₩6,221,987,000)

제 2조 세입.세출 명세는 "세입.세출예산서"와 같다.

제 3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확정한다.

제 4조 관, 항, 목 간의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전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